

정보통신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개발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의 적용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소관부서 업무와 정보시스템 간의 시행을 일치하고자 함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요청 업무의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소관부서장이 적용 시기 등을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검토 후 확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(제13조 제1항)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13조 (개발업무 이행 및 교육) ① 업무의 정보화개발이 완료되면 이행시기 및 절차는 정보화주관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 ②~④ (생략)	제13조 (개발시스템 적용 및 교육) ① ----- 소관부서장은 적용 시기 등을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정보화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장의 통지 내용 및 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 등을 정하고 이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. ②~④ (현행과 같음)	정보시스템 적용 절차 명확화

3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ICT 추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○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BIFC 6층 ICT 추진실

- 담당자(이메일) : ssdkchh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456
- 팩스번호 : 051-955-5408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(기간 20일 미달 시)

소관부서 업무와 정보시스템 간의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으로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신속한 시행